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출입통제 명령서

제 2023-20 호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시설</td><td colspan="4">시설명 관내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소재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소유자
(관리자)</td><td colspan="2">성명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소</td><td colspan="2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명령의 내용</td><td colspan="2">명령의 구분 이동제한</td><td colspan="2">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</td></tr>
<tr><td>이행장소 '23. 4. 이후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
설정된 방역지역 내 철새도래지
인근 지정된 통제구간</td><td>이행기간
'23. 4. 10. ~
방역지역 해제 시</td><td>대상 두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명령대상</td><td rowspan="2">가축</td><td>축종</td><td>품종</td><td>성별</td><td>연령</td><td>귀표(개체)
번호</td><td>특징</td><td>비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람</td><td colspan="6">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</td></tr>
<tr><td>차량</td><td colspan="6">관내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>준수사항</td><td colspan="6">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.
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*을 충족하고 시·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
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,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*을 준수해야 함</td></tr>
</table>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4월 10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